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호지역관리기금 설치〉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47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호지역관리기금 설치(안 별표 2 제72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9.

다. 회 부 일 : 2025. 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지역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보호지역관리기금 설치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호지역관리기금 설치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제5조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지역 기본법안」(의안 번호 제2215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동 법률안에 따른 ‘보호지역관리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보호지역 기본법안」은 현재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보호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법률안으로, 동 법률안에 따른 보호지역관리기금은

1)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보호지역의 지정·관리·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목적으로 설치됨.

참고로,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 자연경관, 지질학적 특성,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지리적으로 구획된 지역으로 (안 제2조 제5호),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등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보호지역관리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보호지역 기본법」
기금명	보호지역관리기금
재 원	◦ 정부의 출연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보호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입 ◦ 국제 협력 기금 ◦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20조2)에 따른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 제24조3)에 따른 보호지역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 제25조4)에 따른 보호지역 보전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지원 ◦ 제26조5)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 제27조6)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지원 ◦ 제28조7)에 따른 국제협력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관 리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제20조(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호지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지역의 지정, 분류, 해제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
2. 보호지역 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변화에 관한 정보
3.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4. 재정 투입 및 성과 등 재정 현황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보호지역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정보 및 소관 보호지역 관련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갱신하여야 하며, 정보의 표준화와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국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보호지역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3) **제24조(국민 인식 증진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의 가치와 중요성 및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보호지역 및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여 보호지역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민 인식 증진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제25조(시민 참여 프로그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보호지역 보전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시민과학 프로그램
 2. 자원봉사 활동
 3. 생태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4. 보호지역 공동 모니터링
 5. 지역사회 기반의 보전 활동 및 파트너십 구축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제26조(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보호지역 인근 지역사회가 보전 활동의 실질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육성
 2. 보호지역의 관리 및 모니터링과 관련 지역 일자리 창출
 3. 지역 주민 대상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 ② 국가는 보호지역과 관련된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지역 공동체의 보전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당 공동체가 자긍심을 가지고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6) **제27조(조사 및 연구 지원)** ① 국가는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조사,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는 과학적 지식과 지역 고유의 생태 관련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 주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다양성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측
 2.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 및 보호지역의 적응 방안 연구
 3. 생태계 복원 기술 및 적용
 4. 보호지역 관리기법의 개선 및 개발
 5. 보호지역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6. 지역 고유의 생태 관련 경험 및 지식의 조사·발굴 및 활용 방안 연구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결정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제28조(국제 기준의 준수 및 국제협력)** ① 국가는 보호지역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 협약」,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등 관련 국제 협약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보호지역의 정의, 분류, 관리 기준 및 관리 효과성 평가 등에 관하여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보호지역 관리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도록 노

다만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며 칸막이식 운용에 따라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기금 신설 심사 요건으로 ①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②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③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 일반 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에 따라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⁸⁾

력하여야 하며, 국제협력을 통하여 도출된 성과를 국내 보호지역 정책과 관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와의 기술 및 정책 협력
2. 국제기구와의 공동 연구 수행 및 기술 교류
3. 국제기구와의 인력 교류 및 역량 강화
4. 국제회의 참여 및 성과 공유
5. 그 밖에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제 협약 및 기준의 준수, 국제협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기금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 보호지역관리기금은 정부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재원은 목적사업인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운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기금의 재원 중 ‘보호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경우 목적사업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입장료·사용료 및 수익은 이를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⁹⁾,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자연공원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신축적 사업추진 필요성) 보호지역관리기금의 용도는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운영,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교육·홍보 등으로 연례적 성격의 사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지역 기본법안」에 따른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 및 보호지역 관리계획에 의하여 사업추진

9)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①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입장료 또는 사용료는 각각 이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은 그 해의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대한 문화재의 기여 정도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소유한 자에게 지원한다.

계획이 사전에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¹⁰⁾ 등을 고려할 때, 기금을 활용한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중장기적 안정성)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지역 관리에 관한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임.

다만, 재원조달의 경우 보호지역관리기금의 재원 중 국가 등으로부터의 출연금·기부금은 의존성이 높아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보호지역에서 발생하는 입장료·관람료·시설 이용료 등은 수익 창출 목적보다는 이용 조절과 관리 목적으로 징수되며 국민의 환경권 보장 측면에서 최소한의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운영, 금융지원, 교육·홍보, 지역사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 「보호지역 기본법안」은 정부가 보호지역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 보호지역 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보호지역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기금 설치의 효과성) 현재 보호지역의 관리와 관련된 특별회계 · 기금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이 있음.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생태계 · 생물종의 보전 · 복원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임.¹¹⁾

국가유산¹²⁾보호기금은 정부 출연금, 천연기념물등 관람료 징수금액 등

11) 「환경개선기본법」

제46조(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가산금

제47조(회계의 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 ·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6.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용도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 · 징수한다.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생태계 · 생물종의 보전 · 복원사업

1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4.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5. 제19조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9.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 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

9의2.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11.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 · 유지 · 관리

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무형유산으로, 이 중 자연유산은

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유산 보존,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임.¹³⁾

따라서 현재도 위의 특별회계·기금에서 보호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별도로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기획예산처는 기금의 주 수입원인 정부출연금 등과 보호지역 지정·관리·운영사업 간 연계성이 낮고, 보호지역 관리는 사전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신속적 사업추진 필요성이 낮으며, 자체재원 없이 정부출연금 등에 의존하는 구조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불확실하고, 현재 보호지역 관리 사업은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해 추진 중으로 기금신설로 인한

「보호지역 기본법안」에 따른 보호지역에 해당함. (「국가유산 기본법」 제3조)

1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2.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3. 매장유산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5.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
6.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 국가유산의 조사 및 연구
8. 국내외 소재 중요 국가유산의 긴급 매입
9. 그 밖에 국가유산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등 국가재정법상 기금신설 요건이 결여되어
기금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보호지역 기본법안」
(의안번호 제2215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별표 2
< 신 설 >	72. 「보호지역 기본법」

문의처
02)6788-5160